

송 무 용 전

수신 **공원녹지과장**

2017. 1. 24.

사 건 명 : **녹지원상회복 조치통보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7-66

청 구 인 (재단법인서울산업진흥원)
피청구인 (**강남구청장**)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행정심판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법 제24조에 따라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답변서 및 요약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도달하도록 해야함
☞ **2017.2.3.까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도달 (1.24. 접수)**

☐ **답변서·요약서·증거서류 각 2부 제출 (전자결재 후 우편송부 국장전결 - 규제개혁법제팀장 협조,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명기)**

※답변서 등 제출 시 제3자 개인정보 반드시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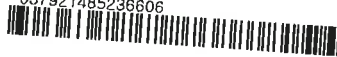
■ **답변서 내용 :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등**

■ **유의사항 : 전자문서 발송 및 우편발송(직인.간인 날인하여 답변서 원본 각 2부 제출)**

■ **수신처 : 서울시법무담당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과 장

037921485236606



수신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2017-66)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이를 송부하오니,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2. 특히 답변서(입증자료 포함) 및 증거자료 제출시 제3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의 표시

- 사건 : 서행심 2017-66
녹지 원상회복 조치 통보 취소청구
- 청구인 :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대리인 : 법무법인 지안 담당변호사 송재순)
- 피청구인 : 강남구청장

나. 제출서류

- 답변서 2부, 사건요약서 1부
(답변서와 사건요약서는 전산파일로도 첨부할 것)
 - 사건 경위 및 주장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서류 2부
- 다. 수신자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조직도에서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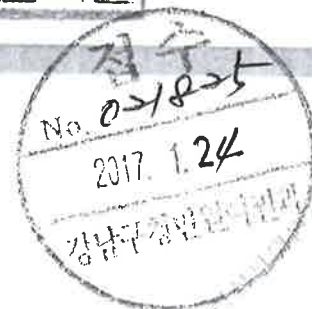
붙임 : 행정심판청구서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주무관 이현지 간사 01/20 송미정

협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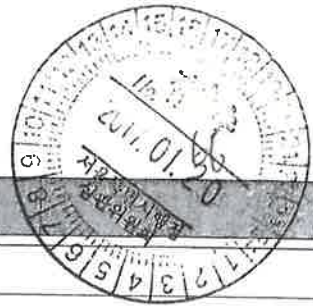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17.1.20.) 접수
-509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법무담당관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hyunjy2@seoul.go.kr / 부분공개(6)

반송하면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상호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주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02-2187-4606
<input type="checkbox"/> 대표자 <input type="checkbox"/> 관리인 <input type="checkbox"/> 선정대표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리인	상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송재순)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2, 영풍빌딩 5층(논현동 142)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02-2007-680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중앙행정심판위원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도행정심판위원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피청구인의 2017. 1. 3. 자 원상회복 조치 통보 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7. 1. 3.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증거 서류	별지 참조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7년 1월 13일

청구인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위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송재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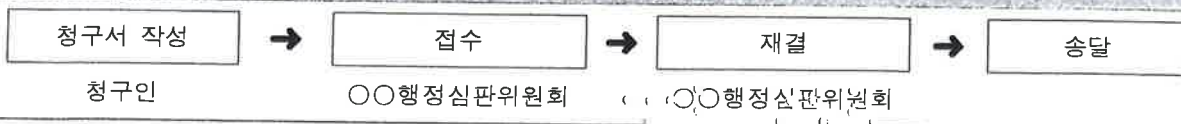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대표이사 주형철
위 청구인의 심판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이명상, 송재순, 이종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42, 영풍빌딩 5층(논현동 142)
(우:135-749, 전화 : 02-2007-6800, 팩스 : 02-2007-68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원상회복 조치 통보처분 취소심판청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7.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원상회복 조치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법무법인(유) **지안**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5층(논현동, 영풍빌딩) 대표 02)2007-6800 팩스 02)2007-6801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또한,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외1필지 지상에 지상 2층, 연면적 11,019.11㎡ 규모의 SETEC 전시장과 지상 3층, 연면적 4,611.46㎡ 규모의 SBA 컨벤션센터를 전람회장 용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SETEC 전시장과 SBA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면서 차량 진출입로 용도로 위 지상 일부인 3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명한 행정청입니다.

2.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의 경위

가. 녹지점용허가 및 연장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외 1필지 지상에서 'SETEC 전시장'과

법무법인(유) **지안**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5층(논현동, 영풍빌딩) 대표 02)2007-6800 팩스 02)2007-6801

'SBA 컨벤션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SETEC 전시장은 1999년경 서울무역전시장이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운영하다가 2005년경부터 서울특별시가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5. 10.경 SBA 컨벤션센터를 축조한 이후 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SETEC 전시장 및 SBA 컨벤션센터는 전시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로, 전문 전시회, 박람회, 각종 이벤트를 비롯한 중소기업 회의 운영이 가능한 전문 전시 컨벤션 시설입니다(갑 제2호증 SETEC 소개자료 참조). 특히 위 전시시설은 국내 중소기업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전시 컨벤션 시설로 다중의 시민과 중소기업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시설물입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5. 10.경부터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SETEC 전시장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고 SBA 컨벤션센터도 축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도로에서 위 전시장의 주차장에 진출입하기 위하여는 일부 녹지를 점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2005. 10.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차량진입로 및 상수도관 매설을 위한 목적으로 녹지 38.6㎡(차량진입로 38㎡, 상수도관 매설 0.6㎡, 이하 '이 사건 녹지'라 합니다)에 대해 기간 2005. 10.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지안**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5층(논현동, 영풍빌딩) 대표 02)2007-6800 팩스 02)2007-6801

이후 이러한 녹지점용 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청구인의 안내를 받아 (i)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ii)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iii)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매 3년간 계속적으로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현재 까지 이 사건 녹지를 점용·사용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녹지점용허가증, 갑 제4호증 세텍전시장 녹지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갑 제5호증 도시계획시설녹지 점용허가 기간연장 승인 통보 참조).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녹지 원상회복 조치 통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녹지에 대해 기존 점용기간이 2016. 12. 31.로 만료되자, 사전에 어떠한 연장신청 안내도 없이 2017. 1. 3.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녹지 점용기간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통보(이하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이라 합니다)를 하였습니다(갑 제6호증 도시계획시설녹지 점용기간 종료에 따른 녹지 원상회복 조치 통보 참조).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 녹지의 기존 점용허가기간이 2016. 12. 31.까지이고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기간연장 신청이 없었다는 것을 들어 이 사건 녹지 지상부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하는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복구기간을 부여하였고, 복구 내용으로 지상부 점용면적에 한해 진출

법무법인(유) **지안**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5층(논현동, 영풍빌딩) | 대표 02)2007-6800 | 팩스 02)2007-6801

입로 아스콘 포장 철거 및 녹지 조성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청구인의 점용허가 연장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기준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신뢰를 위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보아도 청구인이 점용·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녹지는 SETEC 전시장 및 SBA 컨벤션센터를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진출입도로 현재 주차장으로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인바,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위 전시장의 출입과 전시물의 이동을 막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원상회복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도 않고 원상회복으로 인해 막대한 공익상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신뢰 위반!
↓
정법 2항

→ 신의칙 위반
→ 1) 사정예외의 범용·대용? 있나?
2) 원래는 이게 권익사유가 관여
경시X

3.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적인 위법과 관련하여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고, 청문 또는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리, 의견리, 의견리
내외공리법
민중의소리

나아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녹지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연장하지 않고 SETEC 전시장 및 SBA 컨벤션센터 자체를 철거하라는 입장이었으므로 이미 이 사건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단지 점용기간 만료 전에 형식적인 연장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점용허가기간 만료 안내 및 의견제출 기회의 부존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녹지의 점용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그 점용허가기간이 곧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즉, 청구인이 2005. 10.경 이 사건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이후 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청구인은 공문을 발송하여 점용허가기간의 연장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기간 연장 안내 공문을 받은 후에 연장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녹지를 점용하여 왔습니다(갑 제7호증의 1, 2 각 점용허가기간 만료 예정 안내 공문 참조).

2005. 10. 1 ~ 2016. 10. 31

이런 안내 공문 1

특히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용기간 만료 안내 공문을 발송할 때에 청구인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관할구역 내에서 녹지 등을 점용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일괄로 발송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도 당연히 점용기간 만료 전에 이러한 안내 공문을 받고 점용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하면서는 청구인에 대해 사전에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안내나 통지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점용사용자들에게는 유선통화를 하여 점용기간 만료를 안내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유독 청구인에 대하여서만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 녹지에 대한 점용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청구인에게 점용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고 그 연장신청에 대해 안내하여, 그와 같은 기간만료 및 연장 안내 공문을 통해 연장신청을 한다는 신뢰를 청구인에게 부여하였는데, 그와 같은 기간 만료 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견제시나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않았는바, 이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당사자에게 부여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점용기간 만료 안내 공문이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미 기존 처분 등을 통해 SETEC 전시장의 존치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이 SETEC 전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였더라도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한 상황이었

습니다.

즉, 피청구인은 당초 존치기간이 2015. 6. 30.이던 SBA 컨벤션센터에 대해 청구인이 2015. 6. 23. 존치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자, 실질적으로 제2시민청이 입지되는 것을 문제 삼아 SBA 컨벤션센터가 가설전람회장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그 수리를 보류하면서 시정지시 및 보완요청을 하는 등 사실상 존치기간의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귀 심판위원회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청구를 제기하였고(서행심 2015-991호), 그 행정심판 절차에서 인용 재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갑 제8호증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참조).

그러자 피청구인은 SETEC 전시장에 대해 이런 저런 문제를 제기하다가 2016. 9. 27.에는 존치기간이 2016. 9. 30.이던 SETEC 전시장의 존치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사실상 철거하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처리불가 재통지 참조).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의무이행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현재 해당 사건은 서행심 2016-1173호로 귀 심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SETEC 전시장과 SBA 컨벤션센터 자체를 철거하라는 입장이었고, 귀 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해당 건축물 일체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여 위 전시장의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녹지에 대하여도 ^{다만, 여기} 점용기간 연장허가를 할 리 없다는 것은 사실상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공연하게 이 사건 녹지에 대한 점용기간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표방한 상황에서 단지 청구인에게 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에 의해 야기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간연장 신청했음? → 불응

더욱이 점용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7. 1. 10. 이 사건 녹지에 대하여 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바(갑 제10호증 SETEC 전시장 녹지점용허가 신청 참조), 그 절차적인 문제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 → 불응

나. 비례의 원칙 위반

(1) 한편, 피청구인이 이 사건 녹지에 대하여 공원녹지법에 따른 점용기간 연장 허가를 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녹지의 확충과 조성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과 점용을 불허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청구인의 이익 내지는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있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먼저 청구인이 현재까지 점용하고 있는 이 사건 녹지는 SETEC 전시장의 차량 진출입로로, 관람객들과 전시회 참가자들이 이동하고 물품 등을 운반하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위 진출입로를 폐쇄할 수 밖에 없어 관람객들과 전시회 참가자들은 차량으로 SETEC 전시장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SETEC 전시장 및 SBA 컨벤션센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522 62 215

SETEC 전시장은 서울의 중소기업 및 기업인을 위한 판로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시컨벤션 시설이며, 2013년~2016년에는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전시컨벤션 부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시민과 중소기업 및 창업자들에 대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공공시설입니다(갑 제11호증 신문기사 참조).

특히 SETEC 전시장에서는 건축박람회, 유아박람회, 프랜차이즈 박람회, IT 기기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전시회 및 이벤트가 연간 80여회 이상 개최되며, 연평균 7,800여개의 중소기업이 위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여하여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100여만 명의 일반시민이 관람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적 시설인 SETEC 전시장의 차량진출입로를 봉쇄해버린다면 당장 관람객이 차량으로 방문할 수가 없고 전시회 참여자들도 차량을 이용해 전시물품을 이동할 수가 없어 그 이용객 및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며, 나아가 청구인의 각종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막

대한 장애와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 사건 녹지를 청구인이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 중소기업과 기업인,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SETEC 전시장의 진출입 등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일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녹지의 점용기간 연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내지 청구인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녹지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시민과 중소기업 및 기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SETEC 전시장 및 SBA 컨벤션센터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 전시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실제 SETEC 전시장은 2017년경 7월경까지 이미 상당부분 대관 예약이 완료되어 있어(갑 제12호증 2017 SETEC 전시장 개최목록 참조)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을 통해 차량진출입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그로 인해 다수의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이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고, 청구인 역시 대관예약의 취소 등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진출입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현재 SETEC 전시장 부지 내에 있는

법무법인(유) **자안**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5층(논현동, 영풍빌딩) 대표 02)2007-6800 팩스 02)2007-6801

주차장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주변 교통의 심각한 혼잡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될 수 밖에 없어 유·무형의 피해는 이루 산정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3) 한편, 이 사건 녹지의 점용 부분은 38.6㎡에 불과하여 이 부분의 아스콘 포장을 철거하고 녹지로 조성한다고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미지수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 녹지 부분은 인도에 접해 있어 사실상 녹지의 효용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차량의 진출입에만 어려움을 초래할 뿐 실질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나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 사건 녹지의 현장사진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갑 제13호증 현장사진 참조1).

즉, 피청구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이 사건 녹지는 그 면적이 매우 미미하여 원상회복을 통해 달성하는 이익이 거의 없는 반면, 이 사건 녹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공공적 시설인 SETEC 전시장과 SBA 컨벤션센터는 사실상 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결국,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공익 내지 청구인의 이익이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1) 해당 현장사진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녹지입니다.

부당하며, 나아가 전체 서울시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은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원상회복 처분이 유지된다면 전체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도 공익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의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받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는바, 청구인이 더 이상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귀 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 갑 제2호증 SETEC 소개자료

1. 갑 제3호증	녹지점용허가증
1. 갑 제4호증	세택전시장 녹지 점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
1. 갑 제5호증	도시계획시설녹지 점용허가 기간연장 승인 통보
1. 갑 제6호증	도시계획시설녹지 점용기간 종료에 따른 녹지 원상 회복 조치 통보
1. 갑 제7호증의 1, 2	각 점용허가기간 만료 예정 안내 공문
1. 갑 제8호증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5-991)
1. 갑 제9호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처리불가 재통지
1. 갑 제10호증	SETEC 전시장 녹지점용허가 신청
1. 갑 제11호증	신문기사
1. 갑 제12호증	2017 SETEC 전시장 개최목록
1. 갑 제13호증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심판청구서 부분	1부
1. 소송위임장	1부

2017. 1. 13.

위 청구인의 심판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안

담당변호사 이명상

담당변호사 송재순

담당변호사 이종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법무법인(유한) 지안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2, 5층(논현동, 영풍빌딩) 대표 02)2007-6800 팩스 02)2007-6801